

의안번호	2203788
의 회 인	김미애의원
회 답 일	2024. 9. 19.
추계번호	24C3655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9(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(이하 “아동학대사망사건”이라 한다)의 예방과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고, 해당 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할 수 있음 -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 및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9조의9(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(안 제29조의9)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하여 아동학대사망

사건 사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,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학대사망 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망사건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

- 현재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 관련 조사 및 통계 구축 등의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있고, 2024 년 기준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을 위해 264 억 2,700 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 - 아동학대 사건 사례 분석을 위해서 별도 조직을 신설하거나, 아동권리보장원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업무의 위탁과 아동학대사망사건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 현시점에서 분석 업무량과 그에 필요한 인원, 아동학대사망사건특별위원회의 업무범위 및 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- 아동학대사망사건특별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는 경우 지원조직의 인건비, 운영비 등의 편성이 필요하고, 지원조직의 규모 및 아동권리보장원 인력의 활용 여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